

대구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과정

- 발의일자 : 2021. 3. 10.
- 발 의 자 : 차 금 영 의원 외 2명
- 회부일자 : 2021. 3. 12.
- 상정일자 : 제22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1. 3. 23.)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 : 차 금 영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대구광역시 서구의 보조금이 지원될 시설이나 단체 등에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로 구민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(안 제1조~안 제2조)
- 적용범위 (안 제3조)
- 표지판의 설치조건, 종류 및 내용과 설치 (안 제4조~안 제9조)
- 비용부담 (안 제10조)
- 관리감독 및 평가 (안 제11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 찬 규)

- 본 제정조례안은 서구의 보조금이 지원 될 시설이나 단체 등에 대해 주민들이 해당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관, 보조사업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사·시설·운영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,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효율적인 보조사업의 운영·관리를 도모하고자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와 비용부담, 관리감독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,
-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시 주민들이 보조금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더 나아가 감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 집행은 물론, 대 구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음.
- 다만, 지방보조금 지원범위가 보조법인(단체)별로 차이가 많아 보조금 지원금액에 비해 표지판 설치금액 부담이 많은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므로 표지판 설치 기준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할 때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.
- 참고로 전국 49개 지자체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, 대구는 대구광역시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타 구·군에는 조례가 제정된 곳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요 지	답 변 요 지
<p>○ 제10조에 “표지판의 설치·관리 및 철거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원칙으로 한다”로 되어 있고, 단서조항으로 “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부하는 보조금에 그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”라고 명시되어 있는데, 단서조항에 의해 설치비용 부담주체에 대한 판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을 것 같은데 단서조항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어떤지?</p>	<p>○ 단서조항으로 인해 설치비용 부담주체에 대한 해석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, 비용 부담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.</p>

5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□ 수정가결 내역

대구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0조 단서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 중 “공포한 날로부터” 를 “공포한 날부터” 로 한다.

조문대비표

조 례 안	수 정 안
<p>제10조(설치 등의 비용) 표지판의 설치·관리 및 철거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<u>다만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보조금에 그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.</u></p> <p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<u>날</u>로부터 시행한다.</p>	<p>제10조(설치 등의 비용) ----- ----- ----- ----- . <단서 삭제></p> <p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----- <u>날</u>-----.</p>